동작구의회공고 제2019-13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4월5일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우리구의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, 이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여,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(안 제2조, 제3조)
- 다.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 (안 제6조)
- 라. 실태조사 (안 제7조)
- 마.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, 제9조)
- 바. 협력체계의 구축 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4월 11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324, FAX 817-1474, E-mail : dongsuyeom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소외·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1인 가구"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.
- 2. "고독사"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,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
- 3. "고독사 위험자"란 경제적·신체적·정서적·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사회적 고립가구"란 가족, 이웃,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사회적 고립 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·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**제5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**제6조(예방계획의 수립)**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
 - 2.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고독사 위험자 발굴ㆍ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
 - 4.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5.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8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
 - 1.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
 - 2.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
 - 3. 동 주민센터, 사회복지기관,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
 - 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9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- 1.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
- 2. 정기적인 안부확인
- 3. 가스·화재·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
- 4.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
- 5.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
- 6.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
- 7. 사물인터넷(IOT)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
- 8.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· 연계 서비스
- 9. 일자리 알선
- 10.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·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